

김제시 공고 제2023-685호

「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3일

김 제 시 장

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1. 개정이유**

-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보조금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적용범위를 확대 운영하고, 지원범위를 공동주택 세대수별로 정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 보조금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(참조:건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: 우편번호54386/김제시 중앙로 40(서암동, 김제시청) 건축과(전화: 063-540-3142, 팩스: 063-540-3528)

다. 의견 제출 방법: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·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

4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(전화: 063-540-3142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입법안, 신·구조문대비표

김제시 조례 제 호

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외)중 10세대 이상인 건축물 및 그 대지”를 “제외)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2천만원 이하로 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100세대 미만 3,000만원 이하
2. 100세대 이상 5,000만원 이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김제시 행정구역 안에서 「주택법」 과 「건축법」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중 10세대 이상인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제외)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보조금 지원범위) ① 지원금액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2천만원 이하로 한다. <신 설> <신 설> ②·③ (생략)</p>	<p>제6조(보조금 지원범위) ① ----- ----- 다 음 각 호와 같다. 1. 100세대 미만 3,000만원 이하 2. 100세대 이상 5,000만원 이하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